#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웅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7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노웅래·한준호·홍성국

윤영덕・인재근・설 훈

김민철 · 김수흥 · 임종성

이해식 · 김교흥 · 김윤덕

민홍철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.0조원 중 5.6조원을 분담하고 정부는 원금 2.4조원과 금융비용 전액(2.9조원)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 확충 및 4대강 이자 비용 보전(2016~2036년까지)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간 약 4,300억원 규모로 출자 중에 있음.

그 결과 광역상수도건설의 확충 등에 따라 2022년에는 수공의 납입자본금이 현재의 법정자본금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자본금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(안 제4 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"10조원"을 "15조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자본금 및 출자) ① 공사의	제4조(자본금 및 출자) ①
자본금은 <u>10조원</u> 으로 한다.	<u>15</u> 조원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